

서 울 고 등 법 원

인 천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인천)2021나10317(본소)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인천)2021나1032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Y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박현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권동휘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16가합56041(본소), 2017가합
60511(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34,728,678원 및 그중 1,403,390,548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596,609,452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334,728,67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각 2021. 12.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169,448,951원 및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169,448,95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97,663,141원 및 그중 ① 2,315,690,59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② 3,221,056,6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3. 2.자 반소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③ 560,915,8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6.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초 인클라인 공정지연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534,474,5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8,144,184원 및 그중 410,784,9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837,359,28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2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19면 2행과 23면 12행의 "이 법원의"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8면 12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및 그 이하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면 2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0면 15행부터 22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간접비 지급의무

앞서 든 증거, 갑 제16,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4. 4. 25. P 2개동 용지보상의 지연으로 6개월 착공 지연, 국도 R호선 굴착심의 및 점용허가 지연 등에 따른 R국도 가시설 설치로 4개월 지연, S 민원발생으로 인한 노선변경으로 실착공 2개월 지연, O 부지 인허가 지연, 동절기 강설에 따른 추가공사기간 소요 등 사유로 2014. 5. 4.까지였던 공사기간을 2014. 7. 23.까지로 연장(이하 '1차 연장'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4. 8. 22. 인클라인 가교공사, M역 신호설비 공사 외 8개 공사(앞서 본 추가공사 중 실정보고 승인분), 통신부분 인수인계자 투입 후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수목식재 조정 공사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연장(이하 '2차 연장'이라 한다)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확정측량 미완료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20.부터 2015. 5. 21.까지 총 182일간 이 사건 공사가 중지(이하 '1차 공사중지'라 한다)된 사실, ④ 원고와 피고는 2015. 5. 21. M역 철도 신호 설비 공사¹⁾, 진입부 R국도 선형개량 공사,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실시

1) 앞서 본 추가공사 중 피고 승인분에 해당한다.

설계변경 및 완료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2015. 9. 28.까지로 연장(이하 '3차 연장'이라 한다)한 사실, ⑤ 피고는 2015. 9. 23. 다시 원고에게 '확정측량 미완료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23.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지(이하 '2차 공사중지'라 한다)된 사실, ⑥ 원고가 2016. 5. 31. 피고에 '현재공정: 2016. 5. 31. 현재 100%'라는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56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의 기준 날짜가 2016. 5. 31.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사가 2016. 5. 31.에 비로소 완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2015. 10.경 완료되었음을 밝히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촉구한바 있고, 이에 피고는 2015. 11. 12.경 원고에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추후 정산할 것을 예정하며 계약금액의 99.6%(= 40,703,300,000원 / 40,83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발생한 임차료, 전기요금 등은 2015. 12.까지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가 현장사무실을 사용하도록 메인스테이션 지하1층 기계실 관리실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었으며, 2016. 2.경 건설폐기물 처리, 2016. 3.경 해빙기 사면붕괴에 따른 보수작업, 2016. 6.경 강풍피해로 인한 보수작업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은 2015. 9. 28.까지이나 피고의 사정으로 원고가 계약기간이 지나서도 적어도 2015. 12.

31.까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며 현장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일반조건 제26조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2015. 9. 28.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5. 12. 31.까지 그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피고에게 간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23면 11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간접비의 범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비 액수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간 연장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완공 시까지 추가적으로 지출한 간접비가 1,330,483,044원(= 2014. 5. 5.부터 2016. 12. 31.까지의 간접비 1,518,656,377원에서 2016. 1. 1. 이후의 비용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173,333원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제 내역	금액
현장소장 Z의 2016. 1. 1.부터 2016. 2. 29.까지의 급여	25,178,100원 ²⁾
현장소장 Z의 2016. 2. 상여금	15,375,000원
현장소장 T의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급여	43,760,000원
현장대리인 U의 2016. 2.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급여	48,085,100원
현장대리인 U의 2016. 2. 상여금	7,872,000원
공무담당 AA의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급여	30,264,000원 ³⁾

공무담당 AA의 2016. 2. 상여금	6,454,600원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의 가스사용료	417,651원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직원숙소임차료	890,000원
2016. 1. 1.부터 2016. 2. 18.까지의 기타임차료	156,780원
2016. 1. 1.부터 2016. 2. 25.까지의 차량유류비	8,263,663원
2016. 1. 1.부터 2016. 10. 12.까지의 통신비	443,887원
2016년 7, 10월 세금 공과금	352,960원 ⁴⁾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의 직원숙소 관리비	520,770원
2016. 1. 1.부터 2016. 4. 6.까지의 복리후생비	138,822원
합계	188,173,333원

』

○ 제1심판결 24면 18행의 "1,040,494,326원(1,486,420,467원 × 70%, 원 미만 버림)"를 "931,338,130원(= 1,330,483,044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7면 20행부터 28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중간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계약 공사대금 126,700,000원, ② 용지보상금 111,350,000원, ③ 진입도로 선형개선 설계비 57,333,183원, ④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1,423,575,211원(승인분 1,067,096,076원 + 2016. 4. 14.자 실정보고 건 356,479,135원), ⑤ 간접비 931,338,130원 합계 2,650,296,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29면 12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 본소에 대한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34,728,678원(반소채권과 상계 후 잔존한 간접비 외 1,403,390,548원 + 간접비 931,338,130원) 및 그중 1,403,390,548원(2016. 8. 31.에 이

2) 25,178,100원(= 1월 9,549,000원 + 2월 15,629,100원)

3) 30,264,000원(= 2016년 월 급여 5,044,000원 × 8개월)

4) 352,960원(= 7월 221,580원 + 10월 131,380원)

행기가 도래한 위 간접비 외 채권)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596,609,452원(2016. 9. 30.에 이행기가 도래한 간접비 채권 중 원고가 2016. 9. 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금액 2,000,000,000원에서 위 1,403,390,548원을 뺀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0. 1.⁵⁾부터, 334,728,678원(간접비 931,338,130원 - 596,609,4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31면 19행의 "③"부터 32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위 이메일 역시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가 추가공사로 주장하는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감액하여 정산할 것을 협의할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추가공사 등 대금 청구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므로 감액 내용에 대한 공제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추가공사 대금 등 청구 중 진입도로 선형개선 설계비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인정한 금액(57,333,183원)은 위 이메일에 기재된 금액(71,326,283원)과 차이가 있고, 피고가 추가공사 등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 주장의 감액합의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피고가 감액을 주장

5)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3조 제4항, 제20조 제8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함으로써 간접비 지급을 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

하는 항목에 관하여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38면 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11.경 원고에게 오수관로 역류 현상으로 메인스테이션 지하에 보관 중이던 린넨 상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게 린넨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21,531,454원이므로 이를 공사대금 정산 시 제외할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오수관로 막힘(역류)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하자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 감정인 L은 '피고가 주장하는 린넨실 피해와 토목 오수관로의 하자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메인스테이션 린넨실 천장속 오수관이 막힌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밝힌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수관로 막힘(역류)이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38면 19행부터 39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 을 제34, 3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건물 AB 내지 AC호, Q건물 AD 내지 AE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6. 3. 11.경 상수도 배관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감정인 L은 'X건물(숙박시설) 누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현장조사결과 욕실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X건물 하부에

시공된 설비배관에 보온시공 및 열선시공이 된 상태였으나 배관 결빙·동파의 원인이 원고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인지, 유지관리사항인지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힌 점,

② 제1심 감정인 L은 'Q건물(숙박시설) 누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현장조사결과 Q 건물 외벽 창틀상부 및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누수의 원인은 옥상 주차장 파라펫이 낮게 시공되어 우천시 표면수가 X건물 옥상파라펫 두겹석하부로 유입되어 내부의 창틀과 천장으로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힌 점,

③ 누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객실에 관하여 누수가 발생한 기간이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리조트의 기간별 수도요금 내역의 차이가 원고의 시공상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Q건물 옥상주차장으로부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를 손해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 제1심판결 40면 2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계약금액 증액분

을 제14호증의 14 내지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작업체인 W의 요청에 따라 2014. 9. 1. 인클라인 철도 차량 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이하 '후행공정'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을 당초 '2012. 6. 12. ~ 2014. 7. 21.'에서 '2012. 6. 12. ~ 2014. 10. 4.'로 11주 연장하고 그 계약금액을 6,493,300,000원에서 6,987,2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제14호증의 5, 을 제66, 6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후행공정 증액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인클라인 철도 공사 부분(이하 '선행공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다.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4. 5. 4.에서 2014. 7. 23.로 1차 연장할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선행공정도 기간연장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앞서 2의 마.항에서 본 것 같이 선행공정의 계약기간이 원고의 귀책 사유로 2014. 7. 23.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W은 선행공정 지연을 이유로 후행공정의 '2012. 6. 12.부터 2014. 7. 21.까지'였던 계약기간을 '2012. 6. 12.부터 2014. 10. 4.까지'로 그 종기를 76일 연장하였다. 1차 연장으로 인하여 선행공정의 계약기간의 종기가 2014. 5. 4.에서 2014. 7. 23.로 81일 연장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기간의 1차 연장으로 인한 후행공정의 계약기간 연장은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가 위 2014. 7. 23.까지도 선행공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W에 일부 궤도만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선행공정을 최종적으로 완공한 때가 언제인지, 2014. 7. 23. 이후 기간 동안의 선행공정 지연이 후행공정의 계약기간 연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⑤ 피고는 2014. 5. 3.경 원고와 피고, W, 감리단장이 모여 원고가 후행공정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시 회의록이라고 주장하는 을 제66호증에 원고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⑥ 또한 원고가 컨테이너 보관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선행공정의 지연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반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원고)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선행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W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원고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W이 후행공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이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후행공정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선행공정의 계약기간 연장에 주로 기인한 것이고, 달리 원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후행공정의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W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W에 추가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이재환

판사 임 술